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른 조례정비

1)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2항 등)

2)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 납기를 변경하고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 신청 대상에 토지·주택이 포함토록 함.(안 제27조의3)
- 7월 재 산 세 ⇒ 7월 재산세(건축물 전액, 주택분 1/2)
- 10월 종합토지세 ⇒ 9월 재산세(토지분 전액, 주택분 1/2)

3) 재산세 과세표준의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조정 및 세율을 인하함.

나. 자동차세 중 시시당 140원 및 22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조정함. (안 제37조제1항)
- 시시당 140원 적용 1,500시시 ⇒ 1,600시시
- 시시당 220원 적용 승용자동자동차의 배기량을 2,500시시초과 ⇒ 2,000시시 초과로 조정

다. 면세담배 유출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됨에 따른 납세의무자 추가 및 세율을 변경함.(안 제53조제5항, 제55조제1.2항)

라.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함.(안 부칙)

마.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내용을 보완 정비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세법(법률 제7332호, 2005.1.5 공포)

- 시군조례 정비 안 통보(도 재정과-897 2005.1.17)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05. 3. 24 - 2005. 4. 14) 결과 : 다른 의견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3조 중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를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 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과세표준)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 중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을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1,000분의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7조의2를 제27조의3으로 다음과 같이 하고,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28조 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29조제1항 중 "법 제184조"를 "법 제186조"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 중 "건축물"을 각각 "부동산"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를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 의무)"로 하고, 동조 제1호 및 제2호, 제5호 중 "건축물"을 각각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제3호의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를 "비과세 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로 하고, 제4호의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를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 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하고, 제6호의 "건축물"을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며,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7조제1항제1호의 표 중 "1,500시시이하"를 각각 "1,600시시이하"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의 시시당 세액 "220원"을 "200원"으로" 배기량 "2,500시시 초과"를 "2,000시시 초과"로 하고, 동항 제5호의 표 중 "버스"를 각각 "자동차"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행세 세율은 법 제196조의17 제1항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제5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세율)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법 제22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2장제7절(제71조 내지 제82조)을 삭제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납세의무자)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제85조 중 제4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제86조제1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제2항중"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을 "재산세과세대장"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및 제2항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89조 및 제9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과세표준)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1조 중 "1,000분의2"를 "1,000분의1.5"로 한다.

제92조 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3조제1항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하고, 제1항제3호 "비과세 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를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건축물 및 과

세주택으로 된 때"로 하고, 제1항제4호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를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로 하며, 동조 제3항 및 제4항 중 "법 제192조"와 "법 제234조의 21"를 각각 "법 제194조"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94조 중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등"을 "재산세 과세대장"으로 한다.

제4조 본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제5조중 "성주군세부과징수규칙"을 "「성주군세부과징수규칙」"으로, 제7조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제12조제1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제21조제1항 본문 및 동조 제2항제1호·제2호·제4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제37조제2항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하고, 제40조의2 본문중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하고, 제40조의4 제1호 및 제2호중 "교통세법"을 "「교통세법」"으로,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며, 제41조제3항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제2장제4절의 규정(제41조 내지 제51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 안
제3조(세목) ① (생 략)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종합토지세 ③ (생 략)	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1. ~ 7. (현행과 같음) 8.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기항지(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3조(과세대상 등)----------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 ---------- ---------- ---------- ----------.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④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과세대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⑥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현 행	개 정 안
	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5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5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6조(중과세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제27조(세율)①----------. 1. 토지

현 행	개 정 안
가. 주택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이하 1,000분의 3	5,000만원이하 1,000분의 2
1,200만원초과 3만6천원+1,200만원	5,000만원초과 10만원+5,000만원
1,6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600만원초과 5만6천원+1,600만원	
2,2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200만원초과 1만6천원+2,200만원	
3,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초과 6만6천원+3,000만원	
4,000만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4,000만원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과세표준〉 〈세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10억원이하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0억원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
나.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6	
라.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건축물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선박	
가. 고급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이외의 선박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항공기 그 가액의 1,000분의 3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현 행	개 정 안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칠곡군세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신 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현 행	개 정 안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신 설〉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186조----------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30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 ----------.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건축물	1.----------부동산
2.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건축물	2. ---------- 부동산

현 행	개 정 안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로 한다.	3. ----------부동산 4. ----------부동산 ② ----------부동산 ----------.
제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되었을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신설〉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 ---------- ---------- ---------- ----------. 1. 건축물 및 주택 ---------- 2. 건축물 및 주택---------- ------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5. 건축물 및 주택 ----------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과 같다.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

현 행	개 정 안
1. 승용자동차	1. 승용자동차
영업용 / 비영업용	영업용 / 비영업용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배기량 / 시시당 세액 / 배기량 / 시시당 세액
1,000시시이하 / 18원 / 800시시이하 / 80원	——— / ——— / ——— / ———
1,500시시이하 / 18원 / 1,000시시이하 / 100원	1,600시시이하 / ——— / ——— / ———
2,000시시이하 / 19원 / 1,500시시이하 / 140원	——— / ——— / 1,600시시이하 / ———
2,500시시이하 / 19원 / 2,000시시이하 / 220원	——— / ——— / ——— / 200원
2,500시시초과 / 24원 / 2,500시시초과 / 220원	——— / ——— / 2,000시시초과 / ———
1의2. ~ 4. 생략	1의2. ~ 4. (현행과 같음)
5 특수자동차	5 특수자동차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대형특수버스 / 36,000원 / 157,500원	-------자동차 / ---------- / ----------
소형특수버스 / 13,500원 / 58,500원	-------자동차 / ----------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제40조의3(세율)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	제40조의3(세율)①주행세의 세율은 법 제196조의17 제1항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제53조(납세의무자) ① ~ ④(생 략)	제53조(납세의무자) ① ~ ④(현행과같음)
〈신 설〉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5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5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법 제22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510원. 다만	

현 행	개 정 안
판매가격이 200원(20개비당) 이하인 궐련은 20개비당 40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91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2,60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91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040원 3. 냄새맡는 담배 50그램당 650원	
②담배로서 판매가격이 다음 각호의 정하는 금액 이하의 담배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로 한다. 1. 궐련 : 20개비당 100원 2. 각련 : 50그램당 1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7절 종합토지세 〈제71조 내지 제82조〉	제7절 종합토지세〈삭제〉 〈삭 제〉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234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2. 건축물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제83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5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	제85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 ---------- ---------- ---------- ----------

현 행	개 정 안
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 1. ~ 3. (현행과 같음)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토지·건축물및 주택----------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 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산세과세대장----------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토지·건축물 및 주택----------토지·건축물 및 주택-------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td><td>----------

----------..
②----------
------토지·건축물 및 주택 ----------

---</td></tr>
<tr><td>제89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 또는 건축물의 가액(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td><td>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td></tr>
<tr><td>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table><tr><th>과세대상</th><th>과세기준일</th><th>납 기</th></tr><tr><td>건축물</td><td>매년 6월 1일</td><td>매년 7월 16일 ~ 7월 31일</td></tr><tr><td>토 지</td><td>매년 6월 1일</td><td>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td></tr></table></td><td>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도시계획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③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제91조(세율)---------- ---------- ----------1,000 분의 1.5---------.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 ----------재산세---------- ---------- ----------재산세 ----------.
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신고의무) ①---------- ----------건축물 및 주택---------- ---------- ---------- ---------- ----------
1.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1. 건축물 및 주택 ----------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건축물 및 주택 ---------- ------
3. 비과세건축물이 과세건축물로 된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이 비과세건축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 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5. 건축물 및 주택 ---------- ----------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 ---------- ----------

현 행	개 정 안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194조---------- ---------- ---------- ----------.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4조의21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 ---------- ---------- ---------- ----------법제194조------- -------재산세---------- ---------- ----------.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 ---------- ---------- ---------- ----------재산세과세대장---------- ---------- ---------- ----.